

# 중계무역을 하시려구요?

## 중 계 무 역 구 조 와 절 차 상 주 의 점

요즘 연일 중계무역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최근 화두인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함께 내수경기가 악화되어 해외 거래를 중계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발맞춰 이번 호에서는 중계무역의 구조와 절차 상의 주의점들을 살펴보자.

글\_ 이자수 관세사(신한관세법인)

중계무역을 쉽게 도식화 하자면, 김사장이 중국 왕사장에게서 가방을 사다 국내에 팔다가 친구 소개로 미국서 가방 판매를 하는 스미스 씨를 알게 되고 왕사장의 가방을 스미스 씨에게 팔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사된 3자(수출자, 중계인, 수입자)간의 거래에서 중계인의 업무는 물품이 한국을 들렀다 가는 경우와 직접 미국으로 가는 경우 차이가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을 수출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 보세구역 등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정의해 국내에 들르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상 중계무역이라 하면, 물품이 우리나라에 전혀 수입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한다.



## 중계무역과 국내 통관절차

중계무역 물품인 가방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보통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보세구역 내에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관세법 상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입신고도 필요하지 않고 관세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방을 다시 미국에 수출할 때는 반송신고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들르지 않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바로 보내고 대금 결제만 김사장이 받는 경우 국내에서 통관절차는 이행할 수도 없고 이행하지 않는다.

중계무역은 일반 수출입에 비해 복잡하다. 수입거래와 수출거래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국내 중계업무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계무역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중계인이 되는 김사장이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가 서로 모르게 거래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둘 간에 직접 거래가 일어나면 김사장은 중계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때문에 운송서류나 송장 등을 중계인이 다시 구비하게 된다.

## 운송서류의 처리

중국 왕사장과 미국 스미스 씨와 계약을 끝냈다고 가정하자(보통 구두 계약도 빈번하므로). 왕사장이 가방을 만들어 선적할 때 송장(Invoice)과 선하증권(B/L)을 김사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한국에 가방을 반입시켜서 반송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왕사장의 송장을 바탕으로 스미스 씨에게 보낼 송장을 다시 만들고, 선사에서 김사장을 송하인(Shipper)으로 하여 선하증권, 포장명세서를 다시 발행해서 선적서류를 구비한다. 그러나 최초수출자인 왕사장에게서 최종 수입자인 스미스에게 물건이 바로 가는 경우 이런 B/L을 새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김사장은 선사나 포워더에 부탁해 스위치 B/L을 발행하도록 한다. 스위치 B/L이란 최초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사장이 선사나 포워더에 요청해 선적지(중국)에서 발행한 B/L을 회수 또는 세렌더(Surrender) 처리하고 한국 김사장을 수출자로 변경해 발행한 B/L을 말한다.

스위치 B/L을 만들 때는 보통 송하인(Shipper, 이 경우 왕사장을 김사장)으로 이외에도 수탁자(Consignee)나 통지처(Notify party) 등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선적정보인 선박명,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할 수 없다. Switch B/L 발행을 하지 않는 선사나 포워더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대금 결제

대외무역법령에서는 대금거래 상황 확인이 어려운 중계무역을 '특정거래형태'로 분류하여 산업자원부장관(현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와 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인수 및 송부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인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 수출입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계무역에서 대금의 영수와 지급을 각각 다른 은행으로 할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업체에서 중계무역을 외국인도 수출로 주장해 수출금액 전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든지 중계무역에서 수입대금만 지급하는 식으로 외화 도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출금액(스미스 씨에게 보낸 송장의 FOB 금액)에서 수입금액(왕사장에게서 받은 송장의 CIF 금액)을 공제한 '기득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수출실적은 차후에 일반수출금용의 용자한도 결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출실적 확인서류는 위 대금을 지급, 영수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는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영세율은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하는 재화 등에 일반적인 10%의 세율이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해 주고, 매입세액공제까지 허용해 줘서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없애주는 과정이다.

중계무역에서는 수출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관세법 상 수입된 적이 없고 따라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하지 않고 영세율 적용 신청만 한다. 따라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은행 발급)를 첨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따로 해 매출세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 위험과 책임도 두 배

중계무역의 국내 절차를 따르다 보면 일반 수출입업무에

비해 무척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 뿐인가? 김사장은 수입자로서 그리고 수출자로서의 위험과 책임을 하나의 거래에 동시에 짊어져야 한다. 물론 언제나처럼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에는 화이팅을 외친다. 그렇지만, 중계무역의 복잡함과 위험, 책임 등을 생각할 때, 적극적인 행동에 앞서 중계업자로서의 위험과 책임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